

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-9호

부칙

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(지식경제부고시 제2011-194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,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-194호 (2011.10.4.)는 폐지한다.

2013년 4월 23일
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

1. 보험취급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)
2. 특별송달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)
3. 착불배달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)
단,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
4. 계약등기우편물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)
로서 회신우편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) 및
본인지정배달(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)을
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